

# 2023 세법개정안

③ 2023 대비



기획재정부

#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

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(4년간)에  
직계존속으로부터 **증여 받은 재산은**  
**1억원 추가공제**



< 증여재산 공제한도 >

구분	현행	개정안
배우자	6억원	(자동)
직계존속 → 직계비속	<b>5천만원</b> (미성년자 2천만원)	<b>5천만원</b> (미성년자 2천만원) <b>+ 혼인공제 1억원</b>
직계비속 → 직계존속	5천만원	(자동)
기타친족	1천만원	(자동)

※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(총 4년간)에 증여받은 경우

#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

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,  
최대지급액 인상



구분	현행	개정안
지급대상	소득상한 4,000만원	<b>소득상한 7,000만원</b>
최대지급액	자녀 1인당 80만원	<b>자녀 1인당 100만원</b>

# 출산·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강화



구분	현행	개정안
근로자	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	<b>출산·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</b>
기업	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	<b>출산·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</b>

※ 출산·보육수당 :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

#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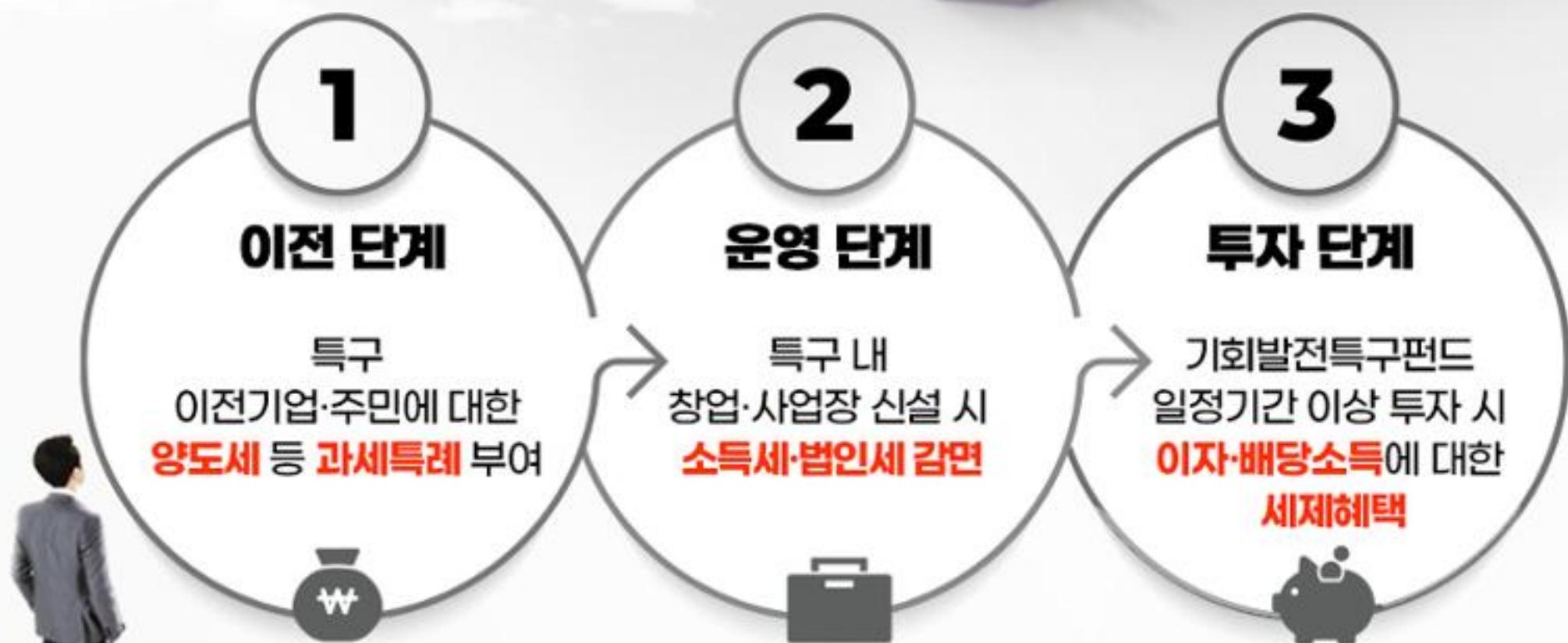


의료비 세액공제*	현행	개정안
6세이하 의료비	한도 700만원	<b>한도 폐지</b>
산후조리비용 (한도 200만원)	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	<b>모든 근로자</b>

\* 의료비 세액공제 : 총급여액 3%를 초과하는 의료비 15% 세액공제

#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

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·세제지원,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



2023

세법개정안- 2023년도



우리 사회의 미래대비를 위해  
인구감소,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 
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

